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개선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1494
----------	------

제안년월일 : 2023년 12월 20일
제안자 : 교통위원장

1. 주문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의 개정(2015. 8. 11.) 등으로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등록기준이 종전(330㎡)보다 상향(660㎡)되었고 강화된 기준은 새로 자동차매매업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
- 다만, 종전 기준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폐업 후, 재등록하는 사례가 많으나 상향된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인근 상가를 매입해야 하는 등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매우 어려운 현실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의 개정을 요청함

2. 제안이유

-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기준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의 범위 내에서 특별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등록기준 범위는 과거 개정(2012. 5. 23.)으로 종전 330㎡에서 660㎡로 강화되었고 이후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 개정(2015. 8. 11.)을 통해 특별시 경우 50만 이

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등록 기준(660㎡)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경과규정으로 법령 개정 전에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한 경우 종전 기준(330㎡)을 인정하나 폐업 후 재등록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660㎡)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 문제는 과거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을 조례에 위임하던 것을 전국적인 통일 기준을 갖춰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법적 규제를 점차 강화해 오면서 관련 사업의 과도한 규제가 유발되어 관련 사업이 위축되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임
- 서울시의 경우 자동차매매업에 등록한 사업자는 개별소유 429개, 법인소유 83개로 총 512개가 운영되고 있으나 관련 법에 따라 25개 자치구 중 인구 50만 이상인 강남·강서구의 경우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전시설 등록기준에 따라야 하고 나머지 자치구는 조례의 기준을 받게 되어 자치구 간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이 이원화되어 형평성 있는 시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해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특히, 현행 법령에서는 개정 전에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한 경우만 종전의 기준(330㎡)을 인정하고 폐업 후 재등록 시 개정된 기준(660㎡)을 적용하고 있으나, 서울시 조례의 경우 개정 이전에 매매업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자동차매매사업장의 경우는 폐업 후 자동차매매업을 재등록하는 경우에도 종전의 등록기준(330㎡)을 적용하도록 부칙을 개정('10.11.4.)한 상황임
- 이는 과거 서울시 모 자치구에서는 폐업 후 재등록을 신청한 자동차매매사업자에 대해 강화된 기준(660㎡)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사업등록을 반려하였으나 이후 서울행정법원 행정소송 결과('08.10.16.) 사업자가 승소한 판례를 반영한 것임

- 따라서, 이러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동차매매업 관련 과도한 기준과 규제들을 개선하여 사업자들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의 등록기준에 대한 경과규정을 「자동차관리법」 개정(2015. 8. 11.) 이전에 자동차 매매업을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장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현실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 결론적으로 법률개정을 통해 서울시에서 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재산상 손해와 혼란을 겪지 않고 과도한 규제보다 형평성 있는 제도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나. 기 타 : 없음

4. 이 송 처

- 국회: 국회의장
- 정부: 국토교통부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개선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자동차관리사업 중에 하나인 자동차매매업은 코로나19 사태를 거쳐 현재는 대기업의 자동차매매업 진출로 인해 많은 변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에서 자동차매매업 등록한 사업자는 개별소유 429개, 법인소유 83개로 총 512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자동차매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일정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관련 법의 규제가 점차 강화되면서 자동차매매업의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관련 법령에서는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을 특별시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도 단서 조항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는 국토교통부령의 등록 기준만을 갖추도록 함에 따라 자치구 간 적용되는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이 이원화되어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관련 행정소송 판례 등을 계기로 법 개정 전에 매매업등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폐업 후 재등록 시에도 전시설면적을 종전 기준($330m^2$)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자동차관리법」에서는 폐업 후 재등록하는 사업자는 무조건 상향된 기준($660m^2$)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제도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자체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규제 일변도로 기준을 강화해 온 것에 기인하는 바, 서울시 내 자동차매매업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 내 자동차매매업이 형평성 있는 제도 안에서 운영되고 경쟁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법률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